



제2938호 2024. 3. 8.(금)

www.jeonbuk.go.kr.

훈 령

- 훈령 제1815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1

고 시

- 고시 제2024-69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7
- 고시 제2024-70호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고시 11
- 고시 제2024-73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남원시) 1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2024-15호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3

공 고

- 공고 제2024-337호 비영리민간단체(익산시에향운동본부) 대표자 변경등록 공고 27
- 공고 제2024-35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록공고 28
- 공고 제2024-362호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9
- 공고 제2024-37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31
- 공고 제2024-396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32
- 공고 제2024-39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34
- 공고 제2024-398호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35
- 공고 제2024-414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공고 36
- 전북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3호 주식 매각 공개 42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4-2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43

기 타

-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44
-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4-2호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통지 공시 송달 45
- 계화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공인 폐기 공고 47
- 백련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공인 폐기 공고 49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4-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5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훈령 제1815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실적가점 기준(제13조 관련)

실적가점 부여요건	가점
1. 새로운 업무발굴·업무관련 창안 등 가. 담당업무 관련 창안채택(중앙부처 및 자체 창안상 수상)	2.0
2. 예산절감에 기여 (제도 및 기술개선에 의한 경우로서 실적평가위원회 및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여야 함) 가. 1억원 이상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 1.0 0.5
3. 지방행정의달인,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규제개혁 정부유공자 ※ 당해 직급 수상자에 한함.	1.0
4.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가. 총괄부서 : 도부 3위 이상 달성 시 0.5점 나. 지표부서 : 지표별 목표 달성자 0.5점(정성평가는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표 담당자) 단, 3개 이상 지표 목표달성자의 경우 0.7점 ※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로 팀장, 팀원 각 1명에 한함.	0.7~0.5
5.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단위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 (수상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 및 팀원 각 1명) 가. 최우수 나. 우수 ※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에 한함.	0.3 0.2
6. 직위공모에 의한 선발자 가. 매 6개월 마다 0.5점씩 가산 나. 2.5점 한도내 부여 ※ 직위공모로 지정된 팀장 및 팀원 각 1명	0.5 (2.5점 한도)
7. 도정발전 유공자 가. 신규시책 및 정책개발 나.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선정 유공 ※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에 한함. 다. 다자녀(2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 - 2자녀 출산 시 - 3자녀 출산 시 - 4자녀 이상 출산 시 ※ 2020.7.1. 이후 출산(입양 포함)하여 2자녀 이상이 된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부부공무원에게 각각 부여됨.	1.0 (2.0점 한도) 0.5 (2.0점 한도) 1.0 2.0 3.0 (3.0점 한도)
8. 격무부서(팀) 근무자 가. 매6개월마다 0.3점씩 가산 ※ 격무부서(팀)원 전원 지급	0.3 (2.0점 한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평정시기) ① (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상당이상 연구·지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 3. (생 략)</p> <p>③·④ (생 략)</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p> <p>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p> <p>제6조(4급상당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상당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p> <p>제7조(5급상당이하공무원의근무실적 등의 평정) ① (생 략)</p> <p>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별표 2”에 규정된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할 수 있</p>	<p>제3조(평정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제3항에 따른 ----- -----.</p> <p>⑥제3항에 따른 ----- ----- 각 호에 따른 ----- ----- -----.</p> <p>제6조(4급상당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 제5조제2항에 따른 ----- -----.</p> <p>제7조(5급상당이하공무원의근무실적 등의 평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 제7조에 따른 ----- -----.</p> <p>②----- 제1항에 따른 ----- -----.</p>

다.

제14조(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근무 실적평가위원회(이하 "실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실적가점 부여) ① (생략)

②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9조(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생략)

②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평가) ①소속기관의 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연구관 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관근무성적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7조(심사자료 제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의 호봉승급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평가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관승급순위자명부(이하 "순위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표와 함께 해당 위원회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 ①소속기관의 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정기승급일 10

제14조(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13조에 따른 -----

제18조(실적가점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제20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 제11조에 따른 -----

제26조(평가) ① ----- 제25조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심사자료 제출) ----- 제25조에 따라 -----

----- 제26조에 따라 -----

제28조(심사) ①----- 제25조에 따라 -----

<p>일전까지 심사·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 후단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9조(심사기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승급대상자로 의결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자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p>②위원회는 제1항의 승급제한자가 아닌 연구관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점이 70점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심사대상자에 우선하여 승급대상자로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생략) <p>③ (생략)</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심사기준)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에 따른 ----- ----- 영 제16조에 따른 ----- ----- <p>②----- 제26조에 따라 ----- ----- -----</p> <p>-. 1.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69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9(2023. 7. 1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지방도 701호선 “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3월 08일

1. 사업명 : 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 노선명 : 지방도 701호선
4. 사업기간 : 2023. 7월 ~ 2025. 12월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따로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

공사명 : 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1	정우	수금	253-3		도	50	16		253	배**			변경 없음
2	정우	수금	253-4		도	203	74			전라북도			변경 없음
3	정우	수금	253-2		도	93	46		253	배**			변경 없음
4	정우	수금	259-1		도	23	23		259	최**			변경 없음
5	정우	수금	265-3		도	23	23			전라북도			변경 없음
6	정우	수금	265-2		도	20	20			김**			변경 없음
7	정우	수금	1032		도	9610	437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	정우	수금	260-1		도	40	40		등기 없음	김**, 김**			변경 없음
9	정우	수금	264-1	264-5	전	370	23	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1번길 3 나동 비이호(가좌동,배성빌라)	김**			
10	정우	수금	264-3		도	13	13			오**			변경 없음
11	정우	수금	264-4		도	53	53			전라북도			변경 없음
12	정우	수금	264-2		도	56	56			오**			변경 없음
13	정우	수금	261-1		도	40	40		199	김**			변경 없음
14	정우	수금	263-4		도	147	124			전라북도			변경 없음
15	정우	수금	263-2		도	106	106		197	김**			변경 없음
16	정우	수금	263-3		도	165	165		197	김**			변경 없음
17	정우	수금	299-5		도	165	72			전라북도			변경 없음
18	정우	수금	299-1	299-7	임	22583	5	5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97	김해김씨여독 공파종중			
19	정우	수금	299-6		임	197	4			정읍시			변경 없음
20	정우	수금	268-3		도	53	53			김**			변경 없음
21	정우	수금	268-2		도	145	145			김**			변경 없음
22	정우	수금	268-1		전	20	20		180	정**			변경 없음
23	정우	수금	270	270-2	대	347	347	126	180	정**			
24	정우	수금	270-1		도	10	10			전라북도			변경 없음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25	정우	수금	272-11		도	5	5			전라북도			변경 없음
26	정우	수금	272-8		도	103	103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27	정우	수금	272-1	272-13	답	900	548	546	564	정**			
28	정우	수금	272-2		도	132	132		정읍군 신태인면 구석리 76	강**			변경 없음
29	정우	수금	278-1		전	45	45		정읍시 신태인읍 구시5길 81-4	송**			변경 없음
30	정우	수금	278-2		도	9	9			김**			변경 없음
31	정우	수금	280	280-4	전	1,385	366	335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7번길 30(비래동)	박**			
32	정우	수금	278-4		도	1	1			전라북도			변경 없음
33	정우	수금	280-2		도	12	12			전라북도			변경 없음
34	정우	수금	280-1		도	36	36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5	정우	수금	산3-2		철	3530	140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6	정우	수금	283-2		도	66	5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7	정우	수금	283-4		철	1179	817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8	정우	수금	283-5		도	93	67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9	정우	수금	284-4		철	2763	332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0	정우	수금	277-2		도	112	102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1	정우	수금	277-5		도	31	31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2	정우	수금	277-4		도	136	0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3	정우	수금	277-3		전	2	2		203	윤**			변경 없음
44	정우	수금	278-5		도	60	60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5	정우	수금	278-3		도	50	0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6	정우	수금	272-3		도	317	69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7	정우	수금	269-2		도	23	21	23		배**			
48	정우	수금	269-1		도	17	17			배**			변경 없음
49	정우	수금	산6-4		도	941	581			전라북도			변경 없음
50	정우	수금	산6	산6-5	임	28819	222	282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97	김해김씨려득 공과중증			
51	정우	수금	262-1		도	26	26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88, 202	김**, 김**			변경 없음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52	정우	수금	262-4		도	15	15			전라북도			변경 없음
53	정우	수금	262-3	262-5	대	124	46	75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97	김혜김씨려득 공과중중			
54	정우	수금	262-2		도	40	40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88	김**			변경 없음
55	정우	수금	261-3	261-4	대	116	36	64	236	배**			
56	정우	수금	261-2		도	93	93		126	김**			변경 없음
57	정우	수금	260-3	260-5	전	238	8	34	236	배**			
58	정우	수금	260-2		도	126	126			김**, 김**			변경 없음
59	정우	수금	259-2		도	53	53		259	은**			변경 없음
60	정우	수금	255-2		도	89	89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255	김**			변경 없음
61	정우	수금	255-1		도	20	20			김**			변경 없음
62	정우	수금	260-4	260-6	대	281	2	26	정읍시 정우면 금남길 13-8	박**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물건종류)	지적 (구조 및 구역, m)	편입면적 (수량, m ²)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정우면 수금리 264-1	감나무		2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11번길3 나동 비 01호	김**			
2	정우면 수금리 260-4	감나무		1주	정읍시 정우면 금남길 13-8	박**			
3	정우면 수금리 261-3	감나무		2주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236	배**			
4	정우면 수금리 270	보리수나무		1주	정읍시 수성택지7길 16-22	이**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80	정**	
5	정우면 수금리 278-1	매실나무		1주	정읍시 신태인읍 구시5길 81-4	송**			
		감나무		4주	↑	↑			
		포도나무		1주	↑	↑			
		대추나무		4주	↑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70호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8일

1. 고 시 명: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2. 적용기간: 고시일로부터 변경고시일까지
3. 임대장비: 굴삭기 등 5종

2024년도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단위 : 원]

건설기계명	규격	'24년도 사용료 (Day)	비고
굴삭기	0.59m ³	535,520	유류비 별도
굴삭기	0.18m ³	430,312	
그레이더	3.65m	728,144	"
덤프	15t	533,496	"
로우더	2.3m ³	571,352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3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남원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8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남원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2	남원시	운봉읍내지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1-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남원시	계	2,501	1,298,041	2,504	1,298,040	3	△1	
	운봉읍내지구	2,501	1,298,041	2,504	1,298,040	3	△1	

- ⑤ 변경사유 : 지구계 변경을 위한 필지 추가 및 제외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계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남원시청 김 국 환(063-620-6131)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5호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8일

1. 제안이유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 2항)
- 나. 사업의 내용,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안 제4조 1항 1호~3호)
- 다. 별지 서식의 “디자인 및 가격” 수정, 가격 할인기준 현실화(별표1~2)
- 라. 일부 문구 정비 및 삭제(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협의 : 여성가족과, 감사관, 예산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다. 입법예고 : 2024. 3. 8. ~ 3. 2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 (전화 063-280-4742 / FAX 063-280-33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063-280-47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이용 가맹점”이란 전북투어패스(이하“투어패스”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관광객이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특별할인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를 소지한 자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이용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맛집·숙박업소·공연(체험 포함) 등의 시설이나 업소를 말한다.

제3조(투어패스 이용방법) ① 투어패스는 1인 1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구입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투어패스 판매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투어패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가이드북(도지사가 발행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어패스 이용방법
2. 투어패스 판매점·가맹점 목록 및 이용범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투어패스의 종류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어패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별 구분

가. 관광형 : 자유이용 가맹점의 시설(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자유이용시설”이라 한다) 무료 이용

나. 관광·교통형: 자유이용시설 무료 이용 및 시·군내 버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2. 이용기간별 구분

가. 한옥마을권 : 전주 한옥마을 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나. 시간여행권 : 군산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제1호가목의 관광형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다. 남원춘향여행권 : 남원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라. 무주반디여행권 : 무주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36시간 이용

- 마. 1일권 :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 바. 2일권 : 최초 이용시간부터 36시간 이용
- 사. 3일권 : 최초 이용시간부터 72시간 이용

3. 형태별 구분

가. 카드형 : 바코드를 인쇄한 카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

나. 모바일형 : 휴대폰 등에 내장된 바코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

4. 그 밖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유형

② 투어패스의 종류별 디자인과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 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행사가 한번에 1,00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
- 2. 한번에 2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어패스 가격 할인율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판매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판매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판매점 지정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판매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판매점이 투어패스 판매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판매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어패스의 판매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내 오프라인 판매점 : 투어패스 1장당 500원
- 2. 도외 오프라인 판매점 :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 3. 온라인 판매점 :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제7조(가맹점 관리) ① 가맹점은 자유이용 가맹점과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 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투어패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할인을 등)
- 2.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산금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자유이용 가맹점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가맹점을 지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해당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이 가맹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맹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⑦ 도지사는 가맹점의 꾸준한 참여 유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 ① 자유이용 가맹점의 정산기준에 관하여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투어패스 운영실적
- 2.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이용실적 또는 방문실적(투어패스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3. 카드수수료 등 판매 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
- 4.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통상 이용금액(입장료 등을 말한다.). 다만, 시·군내버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투어패스 이용 횟수·거리·시간등을 고려한다.
-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북투어패스 디자인 및 가격(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카드형	모바일형
1일권		
가격	8,300원	5,900원
2일권		
가격	13,900원	12,900원
3일권		
가격	19,900원	18,500원
한옥마을권		남원춘향 여행권 
가격	9,900원	4,900원
군산시간 여행권		무주반디 여행권 
가격	13,900원	11,900원

【별표 2】 <개정 2024. 1. 12.>

전북투어패스 가격 할인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개인은 1인 2장 이상, 단체는 20장 이상, 여행사는 1,000장 이상
카드형

투어패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나. 전북도민은 구매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사
람을 말한다.

다. 오프라인 이용권 구매에 대한 할인율이며 할인율은 중복하여 적용
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전북도민	전북 외 다른 지역
개인	20%	할인 없음
단체	20%	20%
여행사	30%	30%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 신청서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 전북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수수료 정산(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판매점 지정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북투어패스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전북투어패스 판매 및 수수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북투어패스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 - 호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서

-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지정기간: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북투어패스 판매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 · 특별할인)가맹점 지정(변경) 신청서

(앞면)

신청인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⑥ 업 종	
	② 상호명 (법인명)		⑦ 전화번호 (사업장)	
			⑧ 연 락 처 (휴대폰번호)	
	③ 대표자		⑨ 생년월일	
	④ 가맹점 소재지			
	⑤ 할인품목 및 할인율			
변경신청 내용				
<p>「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 신청서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 •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가맹점 이용금액 정산 • 전북투어패스 홍보를 위한 현황 정보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점 지정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북투어패스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전북투어패스 가맹점으로서의 권리 및 수수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북투어패스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 - 호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특별할인)가맹점 지정서

-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지정기간:
- 지정내용: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특별할인)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작성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행정7급 박지혜(280-4742)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37호

비영리민간단체(익산시애향운동본부) 대표자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8일

1. 등록번호 : 제2015-1-전라북도-22호
2. 단체의 명칭 : 익산시애향운동본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김 용 균
4. 주된 사무소 : 익산시 동서로61길 21
5. 주된 사업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 향토문화의 개발과 보존
 - 인재육성과 애향장학사업
 - 향토선현 숭모사업
6. 최초등록연월일 : 2015. 9. 11.
7. 변경 내용
 - 대표자 변경 (변경전 : 김진대 ⇒ 변경후 : 김용균)

※ 기타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행정팀 배병훈(280-294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5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19-1-전북특별자치도-8호
- 2. 단체명칭 : 전북지역아동센터연대
-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4, 4층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이 월 순
 - 생 년 월 일 : 1965. 1. 21.
- 5. 주된 사업
 -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연대 및 협력 사업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권익 향상에 관한 제반 활동 사업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사업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향상에 관한 문화 활동 사업
 -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변경	이옥자	이월순	
주소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4, 3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4, 4층	

7. 허가(변경)일자 : 2024. 2. 28.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62호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 종	광고내용	비고
(주)원린종합건설 (정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13-16, 2호 2층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요청	
(주)정상건설 (김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27-51, 2층 202호	건축공사업		
(유)아성종합건설 (양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1길 13	건축공사업		
(주)미가건설 (이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59 2층	토목건축공사업		
세한건설주식회사 (박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36, 5층 507호	토목건축공사업		
(주)해린종합건설 (김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146, 102호	건축공사업		
(주)전원건설 (정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8, 1층	토목건축공사업		
(주)신성종합건설 (배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길 14 (보람빌딩 4층)	건축공사업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 종	광고내용	비고
(주)동촌건설 (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02, 4층	토목건축공사업		
(유)남경종합건설 (정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31, 501호	토목건축공사업		
(유)청해건설 (이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로 167-1	건축공사업		
(유)한울건설 (권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7 ,127 (삼천동1가)	건축공사업		
(유)테라건설 (고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026	토목공사업		
주식회사지현건설 (황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133, 6층	건축공사업		

2. 공시공고기간 : 2024. 3. 8. ~ 3. 23. (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역정책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 수령 후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3.3.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 제83조(등록말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역정책과(☎063-28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7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에 의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8일

등록 번호	분할합병된 법인		분할합병후 존속법인		수리 일자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312000	주식회사 삼덕전기 대표 김영길	경기 시흥시 은계로 260, 1동801호 (은행동, 우평라비엔)	주식회사 우리엔텍 대표 김인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칠목1길 29	'24.2.27.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96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번호 : 제1990-6450000-008-0001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8. 리더빌딩 402호
4. 대표자 : 광미자
5. 주된사업
 - 회원단체간의 사업협의를 자료 및 정보교환
 - 여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등
6. 변경사항 : 붙임1
7. 변경일자 : 2024. 3. 5.

붙임 1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p>명칭 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p> <p>전문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발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 여성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p> <p>제1조(명칭) ① 이회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회의 영문 표기는 Chon Buk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 약칭은 C.B.C.W로 한다.</p> <p>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회의 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 2. 창립총회 개최 후 3년간의 활동이 있는 단체 3. 이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②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5조 ①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 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여성단체나 전라북도내에 시군지부 조직을 5개 이상 가진 여성단체 나. 직능단체의 여성부 조직체로서 전라북도내 시군부조직을 5개 이상 가진 여성단체 2. 준회원 : 이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3. 협동회원 : 전라북도내 시군 여성단체 협의회</p> <p>제16조(고문) ① 이회는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이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단,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전라북도지사 부인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p>	<p>명칭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p> <p>전문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발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 여성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p> <p>제1조(명칭) ① 이회는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회의 영문 표기는 Jeon Buk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 약칭은 J.B.C.W로 한다.</p> <p>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회의 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 2. 창립총회 개최 후 3년간의 활동이 있는 단체 3. 이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②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5조 ①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 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여성단체나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시군지부 조직을 5개 이상 가진 여성단체 나. 직능단체의 여성부 조직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부조직을 5개 이상 가진 여성단체 2. 준회원 : 이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3. 협동회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 여성단체 협의회</p> <p>제16조(고문) ① 이회는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이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단,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부인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p>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9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02-1-전북특별자치도-7호
- 2. 단체명칭 :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
- 3.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화11길 172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황 정 자
 - 생 년 월 일 : 1956. 12. 10.
- 5. 주된 사업
 -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발전 도모
-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변경	한 남 숙	황 정 자	

- 7. 허가(변경)일자 : 2024. 3. 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98호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북특별자치도-15호
- 2. 단체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8. 리더빌딩 402호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곽 미 자
 - 생 년 월 일 : 1960. 3. 29.
- 5. 주된 사업
 - 여성권익증진사업
-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단체명칭 변경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 변경	온 정 이	곽 미 자	

7. 허가(변경)일자 : 2024. 3. 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14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공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15조(구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가. 공모 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개요
 - 현 원 : 위원 24명 (1분과:13인 / 2분과:11인)
 - 분과구성

구분	분 장 사 항
제1분과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제2분과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무형문화재 위원회 기능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 활동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에 관한 자문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 공모대상 및 인원 : 24명 이내

구분	소속	분야	모집인원	비고
무형문화재위원	1분과 (13명)	공예·미술	4명	분야별 모 집인원은 일 부 조정될 수 있음
		국악·공연	5명	
		전통복식	2명	
		한국무용	2명	
	2분과 (11명)	전통지식	2명	
		구전 및 표현	2명	
		생활관습	3명	
		의식·의례	2명	
		놀이 및 무예	2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

나. 응모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응모기간 및 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 2024. 3. 8.(금)~21.(목) 18:00까지
-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주 소 :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9층)
 - 연락처 : 전화(063-280-3314), 전자우편(kjc0413@korea.kr)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후 담당자 통화 확인
 - 우편 및 전자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지원서<붙임1>
 - ▶ 학력(학교, 전공학과 등), 주요경력 및 저서(연구 논문 등)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유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촉서약서 1부

마. 기타사항

- 위원으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김종철 (063-280-3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지원서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한자)	지 원 분 야	<input type="checkbox"/> 공예.미술	<input type="checkbox"/> 구전 및 표현	
			<input type="checkbox"/> 국악.공연	<input type="checkbox"/> 생활관습	
			<input type="checkbox"/> 전통복식	<input type="checkbox"/> 의식.의례	
			<input type="checkbox"/> 한국무용	<input type="checkbox"/> 놀이 및 무예	
<input type="checkbox"/> 전통지식					
현(전)직장		직(위)명			
주 소	()				
전화	-	-	휴대전화	-	-
이메일	@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과정명	학위명	
주요경력					
저서/논문/공연/작품	※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세부내용은 붙임(경력 및 실적내용)에 상세하게 작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1)

경력 및 실적내용 ※ 최신 순으로 작성			
성명		생년월일	년월
	일시 / 기간	실적명	
위원회 / 심사 / 자문			
저서 / 논문 / 연구용역 등			
공연 / 전시 / 연출 / 작품발표 등			
기타실적			

(붙임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	--	------	--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공모 신청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및 안내,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전북특별자치도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주택, 근무처), 전화번호(주택, 근무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학력사항 : 최종 학력(학위) 및 전공(세부전공)
 - 기타사항 : 주요경력, 위원회 · 자문활동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가. 전북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지원서
 - 보존기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선정명부 작성 및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위원 공모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전북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3호

주식 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3월 6일

주식 매각 공개 목록

소 속		직 위	직급 등		성명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상규		
본인과 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신고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주)					
배우자	삼성전자	51	매각	3,720	2024-02-29	2024-03-02	NH 투자증권

군산시 고시 제2024-2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0-141호(2010.6.11.)로 최초 결정 고시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항만:선유도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 나. 명 칭 : 선유도 수산물센터 증축공사
3. 사업개요 : 수산물센터 증축 연면적 175.21㎡(금회, 주2동/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선유도 어촌계
 - 나. 주 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50-2
5. 사업기간 : 인가고시일 ~ 2025. 2. .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옥도면 선유도리	474	잡	20,860.7	20,860.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4-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을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제소방서장
2024년 03월 08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 전북(김제)-2024-0002 호
- ② 단체명칭 : 태정방재
- ③ 대 표 자
 - 성 명 : 김영복
 - 생 년 월 일 : 1974. 02. 14.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예정된 처분	비고
태정방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흥동 179-4, 103호	김영복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4-2호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통지 공시 송달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본부과에 따른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제소방서장
2024년 03월 08일

■ 공 고 사 항

- ① 성 명 : 최유진
- ② 생년월일 : 1994. 06. 21.
- ③ 위반사항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성 명	소재지	근 거	금 액	비고
최유진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건산3길 15, 504호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	2,000,000원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의견제출인

김제소방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계화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화초등학교장

2024년 3월 8일

1. 공인의 폐기





가. 공인 폐기사유

1) 계화초등학교: 2024. 2. 29.자 계화초등학교 폐교로 공인 폐기

나. 폐기일: 2024. 3. 1.

다. 공인 폐기내용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계화초등학교장인(2.4cm×2.4cm)		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2.4cm×2.4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계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1.8cm×1.8cm)		계화초등학교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1.8cm×1.8cm)	
			
계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2.4cm×2.4cm)		계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1.8cm×1.8cm)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계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2.0cm×2.0cm)	계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2.0cm×2.0cm)
	
계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1.8cm×1.8cm)	계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1.8cm×1.8cm)
	

※ 기타 문의사항은 창북초등학교 행정실로 (582-15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백련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백련초등학교장

2024년 3월 8일









1. 공인의 폐기















가. 공인 폐기사유

- 1) 백련초등학교: 2024. 2. 29.자 백련초등학교 폐교로 공인 폐기
- 2) 장신초등학교: 2023. 2. 28.자 장신초등학교 폐교로 공인 폐기

나. 폐기일: 2024. 3. 1.

다. 공인 폐기내용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백련초등학교장인(2.4cm×2.4cm)		백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2.4cm×2.4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백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1.8cm×1.8cm)		백련초등학교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1.8cm×1.8cm)	
			
백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1.8cm×1.8cm)		백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1.8cm×1.8cm)	
			

공 인 명(규격)		공 인 명(규격)	
백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2.0cm×2.0cm)		백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2.0cm×2.0cm)	
			
백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1.8cm×1.8cm)		장신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1.8cm×1.8cm)	
			
장신초등학교장인(2.4cm×2.4cm)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2.4cm×2.4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장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1.8cm×1.8cm)		장신초등학교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1.8cm×1.8cm)	
			
장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2.0cm×2.0cm)		장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1.8cm×1.8cm)	
			
장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2.4cm×2.4cm)		장신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1.8cm×1.8cm)	
			

※ 기타 문의사항은 백련초등학교 행정실로 (581-2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4-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2024년 3월 8일

- 1. 공인 등록 사유: 2024.3.1.자 교명 변경(진안공업고등학교→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 2. 사용개시일: 2024. 3. 1.
- 3.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신 규 공 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공인 인영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공인 인영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공인 인영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공인 인영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공인 인영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진안공업고등학교장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진안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공인 인영	
		

<p>진안공업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p>	<p>공인 인영</p> 
<p>진안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p>	<p>공인 인영</p> 
<p>진안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p>	<p>공인 인영</p> 
<p>진안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p>	<p>공인 인영</p> 
<p>진안공업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p>	<p>공인 인영</p> 